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종합전시전 결산

국내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종합전시전”이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의 장이 되었다.

또한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에서 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제조업체들의 재정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의 필요성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예섭 기자>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내 처음으로 열렸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종합전시전」이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전은 환경부가 주최한 가운데 본협회의 주관으로 최근 다양하게 개발·보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각종 처리기기 및 장비, 자원화 기술 등을 종합전시하여 관련 기술 교류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기기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열렸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한 종합전시전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국내 약 70여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제작업체중 53개 업체가 참여하여 관련 업계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형플랜트 시설에서부터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서 설치·사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시설(1일 300kg정도 처리규모) 및 각 가정에서 손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소형처리기기 및 각종 주방용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음식점, 학교, 각계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기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해도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전시전을 통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전시전의 평이다.

또한 종합전시전에 참관한 참관인들은 총 1만 8천여명으로 대부분 ▲관련업체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련 공무원 24%, ▲민간단체 14%, ▲일반인 13%, 주부 4%, 학생 3%, 기타 9% 등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사회적 문제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는 있으나 이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높다 24%, ▲높다 12%, ▲중간정도 37%, ▲조금 낮다 15%, ▲매우 낮다 12% 등으로 중간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종합전시전 결산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관련 업체들의 재정적인 수준에 대해서 참가업체들은 ▲안정적이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었고, ▲보통이다 12%, ▲영세하다 70%, ▲매우 영세하다 18% 등으로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대답하고 있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자금문제가 51%, ▲인력난 21%, ▲설비문제 10%, ▲기술부족 8%, ▲기타 10% 등으로 자금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답변이 각각 22%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올바른 환경정책 18%, 적극적인 홍보 15%, 기업의 기술향상 및 축적 10%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전시전에 출품한 해당 품목은, 발효기가 22%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화기술(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및 플랜트가 21%, 건조 및 탈수기 15%, 소멸화기(열분해기포함) 14% 등



으로 다양하게 출품되었다.

종합전시전에 참가한 업체중에는 '96. 4월부터 도입한「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품질인증(K마크)」을 획득한 동양기전(주), (주)삼용, 호림산업 등 3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이외에 경기특장개발의 특장차, (주)다나기계의 퇴비·소멸화시설, 동양물산기업(주)의 발효시설, 신우환경(주)의 고속발효기, 평동환경위생기술(주)의 고속발효기, (주)한화의 소멸화시설 등이 출품되었다.

또 (주)건진아산업의 토미속성발효기, 고려화학ENG의 농축용기, 그린키친 남영상사의 탈수기, 성광기업(주)의 쿨린벨, 신성산업의 분리수거쓰레기통, 오토코리아시스템의 퇴비화용기, (주)지구사랑의 GSM 소멸기, 청한실업의 키친크리어, 분해위생백, 청화실업의 썩크린, (주)한일오토메이션의 음식물수거통 등이 전시되었다.

이들 출품물들은 대부분이 자체 개발(63%)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외국도입 제품 및 기술(37%)중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는 25%로 나타

발효기	자원화 기술 및 플랜트	탈수 및 건조기	소멸화기 (열분해 기포함)	분쇄기	약품류 (발효제, 탈취제 등)	용기류	탈취기	압축기	소각로
22%	21%	15%	14%	9%	6%	6%	5%	1%	1%

났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도입한 경우는 대부분 일본의 기술(80%)이었으며, 다음으로 독일(20%)의 기술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자체 개발한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들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선진국(G-7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업체들은 신기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우수한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인정이 필요하며,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자금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현재 조사된 자료들의 현실 적용성이 부족하여 기준이 명확한 자료축적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요구됨을 지적,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충 및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참가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성능, 구조, 규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된 "K마크" 품질인증제도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규격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K마크"의 불합리함을 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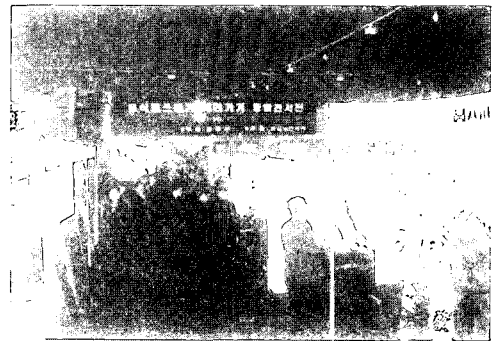
또 참가업체들 대부분이 이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전문 전시전이 절실히 필요하며, 매



년 개최되었으면 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식량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재활용율을 21%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지난 12월 마련하였다.

그중에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비를 국고지원하고, 처리기술개발 및 기기 제작업체 육성을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초기보급단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도까지 총 46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서 50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큰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97년도에 달라지는 환경시책 및 제도

<편집부>

I. 대기분야

1. 기본부과금제도 도입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배경

-현행 농도규제방식으로는 대기오염 저감이 미흡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배출총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였음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 부과항목 : 먼지, 황산화물
- 부과대상 : 대기 1·2종, 특별대책 지역안의 3종 사업장
- 부과방법 : 반기별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
- 부과면제
 - 발전시설 : 황함유량 0.3%이하의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 시설
 - 기타시설 : 황함유량 0.5%이하 액체연료 및 0.45%미만 고체연료 사용시설
 - 최적방지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
- 감면
 - 1종사업장 : '97 : 15%, '98 : 10%
 - 2종사업장 : '97 : 70%, '98 : 50%, '99 : 30%

2. 연료사용규제

가. 저황유 사용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배경

-중유등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는 산업체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연료용 유류의 황함량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지역을 확대

○시행 : '97. 7. 1

○주요내용

- 저황중유사용지역 : 42개 → 64개 시·군
 - 1.0%이하 B-C유 : 40개시·군
 - 0.5%이하 B-C유 : 24개시·군
- 저황경유(0.1%)사용지역 : 60개 시·군 → 전국

나. 청정연료사용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배경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연료를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전환

-시행일자 : '97. 9. 1

○주요내용

- 서울시 : 18평이상 → 12평이상
- 수도권 : 21평이상 → 18평이상
- 부산·대구 : 25평이상 → 18평이상

3.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실시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 배경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위주의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위주로 중점 실시하여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시행일자 : '97. 1. 1(수도권 지역)
 - ※ '98. 1. 1 : 전국확대
- 주요내용
 -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공기과잉율(λ) 측정 추가
 - 주행상태에서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의 선별을 제고(3% → 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여부 확인 강화
 - 가버너 봉인 훼손여부 검사 및 매연검사시 원동기의 회전속도 확인
 - 정기검사 결과의 Feed-Back 활용
 -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제작차 및 운행차 관리자료로 활용

4. 오존예보제 실시

- 배경
 - 오존경보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오존오염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
- 시행일자(예정) : '97. 7 ~ 9
- 주요내용
 - 대상지역 : 서울, 인천등 광역시이상
 - 시행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 예보방법 등
 - 대기오염 및 기상자료를 활용한 통계모델을 사용하여 오존 주의보 발생가능성을 확률로 예보
 - 예보자료는 기상예보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기관을 통하여 홍보

5.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

- 배경
 - 대기오염도가 심한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대기질 관리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대기 오염 저감필요
- 시행일자 : '97. 10
- 주요내용
 - 수도권 몇 개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

6. 오존경보제 확대 실시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배경
 - 대기중 오존(O₃)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어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경보제가 서울, 인천지역에 실시중
 - 이러한 경보제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광역시이상 주요 도시로 확대
- 시행일자 : '97. 7
- 주요내용
 - 대상도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준비사항
 - 대상도시에서는 오존경보상황실 설치
 - 경보전파체계 구축
 - 대국민 홍보 강화등

7. 소음진동규제 개선

근거법령 - 소음진동 규제법

- 배경
 - 필요성이 적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음진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규제법

정책

위를 확대

○시행일자 : '97. 6

○주요내용

- 소음·진동 자가측정 의무제도 폐지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시 시설 및 장비보유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김
- 산업단지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생활소음·진동을 규제

II.수질·상하수도분야

1.기본부과금제도 도입

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배 경

- 지속적인 산업화, 인구증가등 환경악화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에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 총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 부과금을 부과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 현행 배출허용기준초과시의 초과 부과금외에 배출허용기준이하일 경우에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폐수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 1·2종사업장, 특별대책지역내 3종사업장, 폐수종말 처리장(700m²/일이상)
 - 대상항목 : 유기물질, 부유물질
 - 면 제 : 5종사업장
 - 감 면 :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사업장 (하수도 사용료)

2.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체계의 확립

관련법령 - 지하수법

○배 경

-지하수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방치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 미흡한 실정

-'94지하수법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수 자원 보전·관리분야의 미비점 보완 및 오염방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지하수법 개정('96. 12)

○시행일자(예정) : '97. 7. 1

○주요내용

-모든 지하수관정 개발이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대상으로 확대

※현행은 30톤/일이상만 신고

-일정규모이상 관정개발시 허가제도입 및 주변지역 지하수영향 조사서 제출 의무화

※대상규모는 아직 미확정

-무자격업체에 의한 부실시공 및 개발 실패공 방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굴착업 등록제 실시

-지하수 개발·관정을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및 준공신고제 도입

-개발실패공 및 사용종료로 인한 폐공 발생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폐공처리 소요비용을 사전예치하여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공예치금제 도입

3.총인·총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

근거법령 - 환경부고시 제95-143호('95. 12. 26)

○배 경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인의 저감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포함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 대상 :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 방류수수질기준 : 총질소 60mg/l , 총 인 8mg/l
- 배출허용기준 적용
- 대상 : 팔당·대청·낙동강유역의 1-4종 폐수배출 사업장
- 방류수수질기준 : 총질소 60(30)mg/l
총인 8(4)mg/l
- ※()은 청정지역

4.임진강유역 배출 시설 설치허가 제한

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제96-114호('96. 9. 14)

○배경

-신천 및 포천천유역에 밀집해 있는 악성 폐수배출 업소로 인해 '96. 6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등 각종 수질 오염사고의 발생 및 임진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 오염 우려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임진강 중·상류지역인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 (경기도 1시 3군 20읍·면, 995km²)에 대하여 카드뮴, 납, 수은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규허가 금지
-단, 지역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병원, 출판사, 세탁소, 사진현상소등은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입지 허용

5.『합병정화조』설치제도 도입

○근거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생활오수를 발생원에서 직접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 효율이 높은 합병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시행일자(예정) : '97. 7. 1

○주요내용

-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하천상류 및 소하천 인근 지역의 음식업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 설치대상 : 하천, 호수, 바다 경계로 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숙박업, 음식점, 목용탕업

6.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배경

-수질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인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이 수도재정의 적자등으로 인하여 설치되지 않은 곳에 신규로 국고를 융자지원하여 하천의 수질환경개선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2001년까지 217개 정수장에 설치
-'97년도에 300억원으로 16개 정수장에 시설설치 지원 (재특용자 100%)

III.폐기물분야

1.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4항

○배경

-매년증가(년평균 10%)추세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근원적 감량유도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섬유제품제조업등 14개업종중 연간 200톤 이상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생산공정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등의 방법이 포함된 자체감량화 계획

정책

수립 및 제출 의무화

-사업자단체는 소속사업장에 대한 감량화실태평가 및 우수사업장 선정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점검면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우선 지원등 혜택 부여

2.폐기물예치금·부담금 대상품목 추가 및 산정기준 조정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배경

-폐기물부담금·예치금의 효율이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효율과 금액을 인상

-예치금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예치금품목에 PET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선박윤활유, 냉장고를 추가하고

-부담금품목에 플라스틱용기의 건본 화장품(개당 0.7원) 및 담배(갑당 4원)를 추가하고 형광등의 경우 저수는 형광등(개당 6원)과 일반 형광등(개당 8원)을 차등부과함

3.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 지원 강화

○배경

-재정규모가 열악한 일선 시·군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한 30%용자·지원으로는 지자체에서 시설설치를 기피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기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체계를 시

설비의 30%용자에서 30%국고보조로 변경

4.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배경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고 재활용을 유도

○시행일자 : '97 하반기

○주요내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확대하여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이상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감량화 의무를 부여(현행 급식인원 1,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660㎡이상 식품접객업소)

-감량화외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장, 백화점, 호텔에 대하여 신규로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기준을 설정

5.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제도 본격시행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배경

-매립처리에 의존(약 70%이상)하고 있는 국내폐기물 처리 여건을 감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난분해성 포장 폐기물의 감량화 필요성 대두

○시행일자 : '97. 1. 1(계획수립 추진)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감량화계획 수립 및 추진의무화

·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의 일정 비율씩 사용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

· 감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포함된 계획 수립 사항 및 추진실적 관리

· 관련업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재활용 체계 구

축 권고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대상품목	'97. 1. 1 부터	2000. 1. 1 부터	2002. 1. 1 부터
계란난좌·팩	50%이상	60%이상	-
과일난좌	5%이상	15%이상	60%이상
컵라면용기	-	10%이상	60%이상
잡화류제품등의 받침접시류	30%이상	50%이상	60%이상
기타식품류, 잡화 류, 종합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	-	-	60%이상

6. 건설폐재류 재활용 촉진

○배 경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건설폐재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동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 필요

○시행일자 : '97. 1

○주요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건설업체 확대
: 연간시공금액 250억원이상인 건설업자 → 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
- 재활용의무대상자 추가
 - 현행 재활용의무 대상자인 건설업체의 공사발주자도 포함
 - 공사발주자는 공사비에 폐기물 재생 처리비용의 무적으로 반영

7.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중앙지원 강화

○배 경

-기존의 통합시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만 국고지원하였고 일반시 지역에는 지원이 없어 재정이 빈약한 단독시 지역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가 곤란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단독시지역의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시설비의 30% 국고보조

8.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건설

○배 경

-수도권매립지 1공구가 '98년말로 사용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매립지를 3공구에 건설

○시행일자 : '97. 1

○주요내용

-3공구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지반공사, 차수시설 설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착공

IV. 토양·유독물질분야

1. 화학물질에 대한 관찰물질지정제도 도입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 경

-현행 급성독성 위주의 유독물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기간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

○시행일자 : '97. 7. 1

○주요내용

-단기간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그 물질이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유독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정책

2.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 경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배제 대상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리기준의 적용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해당법에서 관리기준이 없을 때에는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시행일자 : '97. 7. 1

○주요내용

-의약품·농약·화학류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해당법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유독물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품목등록제도 폐지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 경

-유독물의 제조·수입시 매품목마다등록하던 것을 신고로 전환하여 업계의 불편해소

○시행일자 : '97. 7. 1

○주요내용

-유독물의 제조·수입시 매품목마다 실시하던 품목 등록제도를 수입신고등으로 전환함

4.유독물관리자등의 공동 활용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 경

-현행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등을 두어야 하는 것이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공동 활용케 하여 부담을 덜어 줌

○시행일자 : '97. 7. 1

○주요내용

-유독물사업장이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내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자체 방제계획 수립 및 인근주민에 사전통보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 경

-유독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독물영업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려 사고등에 대비토록 함

○시행일자 : '97. 7. 1

○주요내용

-유독물영업자 등은 유독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방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유독물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자는 유독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 방제계획등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6.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차등적용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8조

○배 경

-토양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관리내용에 따라 오염도 검사주기를 차등화하여 자율적인 시설관리를 유도

○시행일자 : '97. 6

○주요내용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재질, 제작공법, 설치기간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차등적용

7.토양측정망 운영 개선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배 경

-농경지 위주로 운영되어온 토양오염 측정망을 전국 망과 지역망으로 구분하여 운영

○시행일자 ; '97. 3

○주요내용

-전국망은 토지이용도에 따라 전국의 토양오염개황을 파악

-지역망은 지역내의 오염원 중심으로 토양오염실태 조사

V.기타 환경관리분야

1.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
수질 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배 경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시행일자 : '97. 1. 1

○주요내용

-환경친화기업 신청자격요건 강화

·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요건 강화

· 특별대책지역에서 평가기준 강화(300점→340점)

-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중대한 오염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 야기시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배 경

-환경영향평가제도는 '82년 도입이래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의욕적인 지역개발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가속화가 우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개정('96. 12)

○시행일자(예정) : '97. 7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운영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으로서 오염물질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사업자과 계열회사관계인 평가대행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금지등